

## 첨단기술유출 “산업스파이” 강력 규제

특허청은 국내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국내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영업비밀은 반도체, 휴대전화 및 LCD관련기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정보통신핵심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로 유출되는 지역도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

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처벌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가령,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여 1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 1억원이하

의 벌금 밖에 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y Espionage Act)”은 영업비밀을 미국 외의 다른 국가로 유출한 조직에 대하여 약 120억원(1,0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 버금가도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신설하였으며, 미수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분별조항을 폐지하여 종전의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던 것을 ‘누구든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보호대상도 종전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기업의 영업비밀’로 확대하였다.

이밖에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인터넷도메인네임을 부

정한 목적으로 도용하여 등록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규제하고, 타인의 유명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신설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허청은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업계, 학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각계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허청

##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 처벌형량이 너무 낮아…

개정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부당이득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친고죄조항을 폐지하여 설령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 저금통도 視聽覺 機能으로 승부!

최근 청소년들의 과소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균검 절약을 상징하는 저금통이 종래 단순히 돈만 수납 보관하는 기능에서 탈피하여, 반도체, 디지털기술 등 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축액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부가 설치된 디지털 저금통, 동전을 넣으면 갖가지 소리 가 나는 음향발생 저금통, 각종 놀이 를 겸할 수 있는 오락기능 저금통 등 이 개발되어 있다.

지금까지 상품화된 저금통을 연 대별로 살펴보면, 70년대까지는, 플라스틱으로 된 돼지저금통, 주택, 우체통, 복주머니 모양의 저금통 들이 주종을 이루어온 바, 이들은 주로 저금통의 형상만 달리한 것들 로써 저축한 돈을 꺼내기 위해서는 저금통을 파손해야 하므로 재사용 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80년대에는, 동전 배출구를 두 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금 통, 동전 집계통에 계수눈금을 표 시하여 저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저금통, 저금통 옆면에 연필꽂 이를 부착하여 연필꽂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저금통 등 여러 가지 실 용적인 기능이 부여된 저금통이 개 발되었으나, 이를 역시 황시 재빠 른 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시 대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IT시대에 접어든 90년대 후반에 는, 소비자들도 보고 듣고 느끼면 서 즐기고자하는 감각적 기능을 더 선호하여, 저금통에도 반도체, 디

### IT기술 적극 활용…

### 다양한 디지털 저금통 개발…

### 세계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지털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 로운 첨단기능이 부여되기 시작했 다. 동전식별센서, 투입된 돈을 연 산하는 마이콤, 연산값을 표시하 는 디스플레이부가 설치되어 동전 을 넣을 때마다 저금한 금액이 표 시되는 디지털 저금통, 동전식별 센서, 멜로디칩, 스피커가 설치되 어 동전을 넣을 때마다 멜로디칩에 저장된 “팡파아르”나 “당신은 부 자가 될 거예요”등의 소리가 나는 음향발생 저금통, 깔때기처럼 생 긴 동전투입구가 형성된 저금통을

벽에다 걸어놓고, 던진 동전이 깔 때기 위의 성공구획센서에 맞으면 조명등이 일정시간 깜박이는 등 오 락기능을 구비한 저금통, 동전식 별센서, 금액 기억장치, 투입된 돈 을 연산하는 마이콤, 마이콤으로 부터 신호를 받아 일정한 금액에 도달해야 도어가 열리는 도어개폐 제어장치 등이 설치된 목표금액설 정저금통 등이 개발되고 있다.

### 향후전망

저금통은 주로 영세한 개인업체 에 의하여 사운 phẩm이나 경품용으로 제작되는 것이어서 내수시장 규모 가 미미한 실정이지만, 비교적 간 단한 아이디어로

상품성을 쉽게 높일 수 있는 품목 이라 하겠다.

현재 디지털 저금통의 가격은 1~5만원대로 돼지저금통에 비하면 약 10배~50배정도의 가격에 이르고 있는 바,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저금통을 개발한다면 국내 시장 활성화는 물론 세계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허청

## 금년 들어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 급증

### 전년 대비 40% 증가

특허청에서 특허심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정도(보통 23개월)로 줄일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 99건 → ('02) 1442건  
→ ('03. 상반기) 1006건

우선심사제도란 일반적인 특허 출원보다 조기에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자기실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벤처 블의 진정으로 인하여 벤처 기업에 의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우선심사 신청인 구성은 중소기업 및 개인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심사제도가 중소기업의 초기 기술경쟁력 확보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999년 이후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 및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출원, 기술의 life-cycle이 짧은 전자거래와 관련된 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우선심사제도의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앞으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보다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 특허청, 일본과 특허심사 협력체제 기반 마련

한국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과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양국에 모두 출원된 32건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범적인 특허심사를 수행한 후 그 내용을 비교한 결과, 7건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기로 하고 25건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양국의 특허심사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특히, 특허를 부여

**한·일간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하지 않기로 결정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불특허 이유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의 시범 특허심사 사업은 한국·일본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특허권을 부여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허심사 결과 상호인정」의 전 단계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IT, B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심

사처리 장기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중복된 특허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 특허청은 3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특허청에서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 제

도를 도입하기로 '97년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한 3개국 특허청간의 공동 특허심사사업이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수행된 바 있다. 또한 미국 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부 담의 경감을 위하여 양국에 모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결과를 상호 이용하기로 하고 2003년까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과 2000년부터 공동 특허심사를 수행해 온 것이며

중국과는 올해부터 공동의 특허심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일간의 공동 특허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양국간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양국간 특허심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허청은 특허심사 협력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 분·쟁·엿·보·기

### 퀄컴, 루이스 브루먼트에 계약위반 소송

무선통신기술업체인 퀄컴이 반도체 제조업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실리콘스터레이지가 보도했다. 퀄컴의 루이스 루핀 수석 부사장은 「TI가 퀄컴이 보유한 원천 기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공개리에 노출시켰다」며 「이로써 2000년 특허기술과 관련해 양자가 맺었던 계약을 위반, 소송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루핀 부사장은 또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계약 무효화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2000년 12월 양사는 퀄컴이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TI가 DSP(Digital Signal Processing)기술을 제공, 교환하기로 하는 특허기술공유협정을 체결했었다.

출처 PatYellow.com

제출했다.

이에 앞서 모토롤라도 텍사스주 버몬트의 연방지법에 반도체 제조공정과 관련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ST마이크로를 제소한 바 있다.

출처 PatYellow.com

### ST, 모토롤라 맞고소

반도체 업체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모토롤라가 반도체분야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로 맞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ST마이크로는 미국 텍사스주 샘먼의 연방지방법원에 모토롤라가 음향·영상 압축기술, 기억속도 향상기술 등에 대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방법원의 제롬 프리드먼 판사는 신용카드를 통해 온라인경매에 참가하는 이베이의 경매 방식이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측이 이를 알고도 사용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출처 PatYellow.com

### 이베이, 특허 소송 패소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경매업체인 이베이가 특허소송에 패소해 2950만달러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은 이베이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허권을 위반했다는 머크익스체인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이베이에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버지니아주 지

## 세계 최초, 인터넷기반 전자 출원 100만건 돌파

**전자출원제도 도입후,  
4년 6개월만에 전자출원  
100만건 돌파**

특허청에 따르면, 99년 1월 2일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출원제도를 시행한 지 4년 6개월만에 전자출원이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자출원이 100만건을 넘어서선 것은 우리나라의 IT 인프라, 인터넷 활용능력 그

리고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의 우수성이 서로 어우러져야만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계 지식재산권 정보화 분야에서 선두 주자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허청

## 특허출원 1% 증가, 경제성장을 0.11%를 상승시켜

특허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허출원 1%의 증가는 3년내지 5년의 기간에 걸쳐 경제성장을 0.11%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1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1천건의 특허출원 증가는 '04년에서 '06년까지 약 4,460억원의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증가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기 기업의 특허취득활동 뿐만 아니라 동일산업 내 다른 기업의 특허취득활동도 경제전체의 기술축적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기업의 특허취득 1%증

가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증가 이외의 결정요인인 기술축적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을 0.0292%를 증대시키고 동일산업 내 다른 기업의 특허취득 1% 증가가 총요소생산

**I천건 특허출원 증가 '04년에서  
'06년까지 약 4,460억원 국민소득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

성을 0.1177%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번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허취득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97년부터 '01년까지(4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특허취득공시 126개를 대상으로 공시전후의 주가변동을 분석한 결과, 특허취득공시 전일과 당일(2일)에 걸쳐 해당기업 주가를 4.0184%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연구

개발투자(R&D)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특허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권

위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특허출원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

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특허청에서는 금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재산권 정책수립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 핸드폰 초기화면도 특허

###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면 의장권 부여받게 돼…

홈페이지·PDA 등 화상 디자인 특허청 ‘의장권 인정’ 규정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도 특허법에 의해 의장권을 인정받게 됐다. 특허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을 포함, 컴퓨터나 휴대전화, PDA 등 정보통신기기의 각종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을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장권(디자인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초기화면 디자인

등 각종 화상디자인을 새로 창작했을 경우 의장권 등록 출원을 해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면 의장권을 부여받게 돼 추후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 각종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일반이 접촉하는 화상 디자인은 창작자의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이 투입됐음에도 재산권을 보호받을 방법이 없었다”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 액정화면 등에 나타나는 화상디자인에 대해서도 의장권을 인정하게 돼 창작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

청은 이를 위해 의장심사기준(제3조 제1호)에 “물품의 액정 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의장(Design)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을 신설,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전승철 사무관은 “화상디자인의 경우 신규성과 창작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소유권자 본인은 물론 타인이 출원해도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 사이트 소유자들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PatYellow.com

## 분·생·연·보·기



### 퀄컴과 TI 간 경쟁 격화

“통신단말기 칩 회사인 퀄컴의 TI 견제가 시작됐나.”

최근 퀄컴이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에 대한 특허권 사용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가운데 TI가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 두 회사간에 미묘한 싸움이 시작됐다.

CNET 등 외신에 따르면 TI의 조지프 허바치 부사장은 “퀄컴으로부터) 제기된 내용을 검토했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제소의 배경으로 “자사가 최근 cdma2000 1x 칩 샘플을 내놓는 등 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바치 부사장은 “퀄컴은 몇 년간 경쟁자 없는 CDMA 칩 시장을 즐겨왔으나 TI는 이 시장에 열린 경쟁체제를 마련해 소비자에 득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퀄컴의 루이스 루핀 부사장은 “TI

가 5월 퀄컴이 보유한 원천기술인 CDMA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켰다”며 TI를 델라웨어 연방지법에 고소했다.

퀄컴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2000년 12월 TI와 맺은 상호 특허권 사용 협정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퀄컴의 소송은 TI의 CDMA 공략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퀄컴은 이 시장 기술의 개척자로 계속 이득을 챙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PatYellow.com